

1 창업대체학점 제도란?

- ▶ 창업준비 활동(창업동아리 활동 포함)과 창업 후 경영활동을 어려움 없이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

2 창업대체학점 교과목 종류

교과목명	학점인정 및 성적평가 기준			학점	수강가능여부	비고
창업실습	▶ 창업실습 신청 승인 취득 ▶ 창업실습 월별보고서와 주별보고서(주1회)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매월 말일까지 제출 ▶ 창업실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지도교수 승인 후, 직접 제출 ▶ 결과보고서 평가 후 P/F부여			3	타 교과목 수강 가능	재학 중 2회 인정
창업학기제	예비창업 학기	12~15주	▶ 창업학기 신청 승인 취득 ▶ 매월 말일까지 창업학기 월별보고서와 주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 ▶ 창업학기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지도교수 승인 후 직접 제출 ▶ 결과보고서 평가 후 P/F부여	12	타 교과목은 수강 불가	재학 중 1회 인정
	초기창업 학기					

* 신청서 및 이수계획서 작성 시 상세히 작성

* '창업실습' 및 '창업학기제' 월별결과보고서 작성 시 최소 2개 이상의 활동 관련 사진을 첨부

2 창업실습 신청기준_창업동아리 활동 또는 창업을 위한 팀 활동 등을 창업 준비과정으로 판단하여 학점 인정

- ▶ **2학기 이상** 이수한 재학생(편입생은 1학기 이상)
- ▶ 교내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
- ▶ 본교가 인정하는 창업동아리에 속한 자(2인 이상 10인 이내 본교 학생으로 구성된 창업동아리 또는 팀) 또는 1학기 이상 활동한 학생
- ※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창업교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학생
- ※ 교내 창업동아리 및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주제와 동일한 수행아이템 내용으로 창업실습 수강 불가

3 창업학기제

(1) 예비 창업학기제 신청기준_기간중 창업(사업자등록)을 하는 예비창업자가 수행하는 창업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

- ▶ **4학기 이상** 이수한 재학생(편입생은 2학기 이상)
- ▶ 창업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 또는 정부가 주관하는 창업프로그램에 참여 중 이거나 참여한 학생
- ▶ 예비창업학기 기간 중 **창업 예정인 학생**
- ▶ 창업현장실습을 이미 수강한 학생은 신청불가 (재학중 1회 신청 가능)
- ▶ 해당 학기 예비창업학기만 수강 가능하며, **타 교과목은 수강 불가**
- ※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창업교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학생
- ※ 해당학기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함.

(2) 창업학기제 창업학기제 신청기준_ 이미 창업(사업자등록)하여 실제로 수행하는 창업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

- ▶ 예비창업학기제 6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(편입생은 2학기 이상)
- ▶ 창업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 또는 정부가 주관하는 창업프로그램에 참여 중 이거나 참여한 학생
- ▶ 초기창업학기 신청일 **이전에 창업한 학생(대표, 공동대표)**
- ▶ 창업현장실습을 이미 수강한 학생은 신청불가 (재학중 1회 신청 가능)
- ▶ 해당 학기 초기창업학기만 수강 가능하며, **타 교과목은 수강 불가**
- ※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창업교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학생
- ※ 사업자등록증이 증빙되어야함.

4 신청기간 및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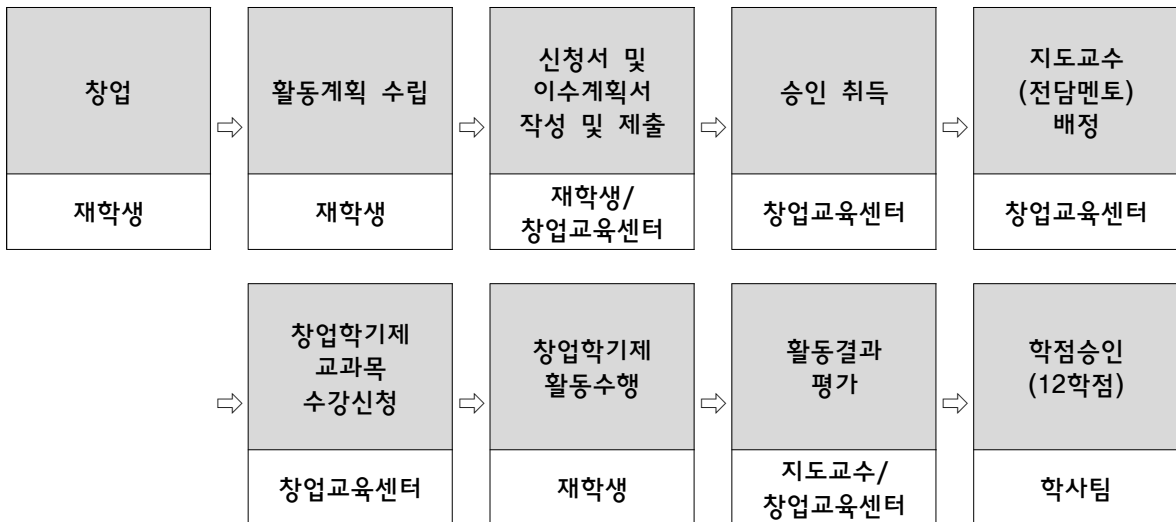
- ▶ 신청기간 : 2026.08.13.(목)~2026.08.28.(금) 9:00~17:00
- ▶ 제 출 처 : 이메일(260108@hoseo.edu) 제출 후 원본제출(강석규교육관 211호 취업팀) 혹은 우편제출
- ▶ 신청서류 : 붙임파일(해당 교과목 신청서 및 이수계획서 제출)

5 신청방법 및 수행절차

가. 창업실습



나. 창업학기제



7 문의처

현장실습창업지원센터 아산캠퍼스 / 041-540-5247 / 강석규교육관 211호